

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5. 28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97. 5. 28
- 다. 상정일자 : 97. 6. 24 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자 : 내무과장 이 수 철

나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키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"이 담당 공무언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, 인계자,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"를 "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"로 개정 (안 제3조 제4항)
- "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"을 "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"으로 개정 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부 :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-66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5. 28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"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, 인계자,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"를 "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"로 개정 (안 제3조 제4항)
- "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"을 "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"으로 개정 (안 제5조)

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 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4항중 "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, 인수자,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." 를 "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제5조중 "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,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"을 "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